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15 | January 2024

A soft-focus background photograph of a person's hands typing on a white keyboard. In the background, a computer monitor displays several bar charts and graphs. The overall theme is professional accounting or tax preparation.

삼정KPMG 세무분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심판례]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

-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7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 [예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예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소득세법

9

- [예규]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방법
- [예규]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10

- [판례]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예규]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Contents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 [심판례]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14

- [판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승)
- [심판례] IAT/BHS터널, 공동구, 남·북지하차도, 유도선교량, GSE교량,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 [심사] 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관세법

18

- [심판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법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법인세법

[심판례]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2중2885, 2023. 12. 12.

[사안]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중 다른 계열사들(“매도주주들”)과 함께 각 보유중인 계열사들(A사, B사, C사를 말하며, “매각대상법인”) 주식(“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D사 및 E사(“매수주주들”)에 매각(“쟁점주식거래”)함. 그 과정에서 매도주주들과 매각대상법인은 주식 매매계약 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지분율에 따라 특별상여금(“쟁점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회계장부상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금원을 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쟁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 납부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사유는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방산, 화학분야의 계열회사를 매각하여 주된 영업인 전자산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매수인, 매각대상법인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핵심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한 것이므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보이는바,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인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매각대상법인이 각각 지급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쟁점 주식 매각에 큰 걸림돌인 파업을 방지하거나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계약 당시 매도인, 매수인, 매각대상법인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이 지급하기로 명시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해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 므로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상여금은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금원이 발생하여 그 수익(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 554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대상심판례 사안의 쟁점상여금은 그 명칭은 특별상여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주식매각 관련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거래 성사를 위하여 집행된 비용으로 보고 주식 매각차익(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 1. 2.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약설(略說)]

- 종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소득금액 X 50%) 안에서 손금산입하였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제2호).
-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국제조세제도과-684, 2023. 12.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 2 제2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약설(略說)]

- 국내 투자가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2. 12. 31. 법령 개정 시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가 도입됨.
- 동조 제6항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예규는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665, 2023. 10. 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약설(略說)]

- 조특령 제11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사안에서 질의법인은 피인수법인의 주식(33.39%,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피인수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쟁점주식 거래로 인해 쟁점주식 취득일에 피인수법인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대상예규는 취득당시 피인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본 것임.

[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59, 2023. 12. 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약설(略說)]

- 조특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예규는 퇴사한 시점(=우리사주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사실상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서이46013-11257, 2003. 7. 3.).

[예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 12. 14.

사업용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함.

[약설(略說)]

- 과거 국세청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2021-법인-3474, 2021. 7. 5.).

[예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 10. 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약설(略說)]

- 기업소득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함(조특령 제100조의 32 제4항).
- 대상예규에는 사실관계가 없으나, 대상예규를 참조한 최근 국세청 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 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효과가 없으므로 실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음(기준-2022-법무법인-0219, 2023. 10. 11.).
- 한편,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소득세법

[예규]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방법
서면-2023-법규재산-3413, 2023. 11. 17.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A사)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B사)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전 양사(A사, B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가 합병 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피합병법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약설(略說)]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8항은 “제4항(대주주의 범위)부터 제7항(시가총액 계산방법)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예규에 따르면, 합병신주의 시가총액 계산 역시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 것임.

[예규]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 2024. 1. 10.

양도 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약설(略說)]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은 “서화·골동품”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당·점당 또는 조(괄호 생략)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각 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를 말하며,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됨.
- 대상예규를 참조한 최근 국세청 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인은 사망한 국내 원작자의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비디오아트 작품을 취득하였음(서면-2023-법규소득-2543, 2024. 1. 11.).

부가가치세법

[판례]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 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사안] 원고 한국철도공사는 ① 경상북도와의 운행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행한 경북관광열차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열차 개조 전 좌석 수를 기준으로 운행 횟수에 따라 비례하여 매월 일정한 전세운임("이 사건 전세운임")을 지급받았고, ② 코레일관광개발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열차 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해랑상품 판매대금")에서 현지 행사비용, 세탁비 등 운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해랑상품 수익")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정산·수령함. 피고는 이 사건 전세운임 및 해랑상품 판매대금 모두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보아 2009년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판단] [전세운임관련] 금원의 지급 및 반환 구조, 운행협약의 내용과 함께 경북관광열차 운행사업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교통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상북도 주민들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운임은 영업수지만으로는 기획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사업자인 원고에게 교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경상북도는 경북관광열차의 운임 매출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전세운임을 돌려받게 되는데 그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 사건 전세운임 전부를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전세운임이 경북관광열차 운행대행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경상북도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열차 운행 대행 용역의 양에 비례하여 이 사건 전세운임 금액도 증가하여야 하나, 원고가 열차 운행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운임 매출액이 발생하면 오히려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세운임의 성격을 열차 운행대행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우므로, 이 사건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해랑상품 판매대금 관련]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해랑열차 사업을 위해 2008. 10. 27. 체결한 '레일크루즈 해랑 위탁운영 협약'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코레일관광개발에 해랑상품의 판매·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그에 따르면 원고는 열차 운행의 횟수나 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등 해랑열차 판매·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특히 코레일관광개발은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해랑상품의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가격결정 권한도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한 점, 코레일관광개발은 매월 원고에게 전월의 판매실적, 비용지출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해랑열차 관련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 또한 코레일관광개발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랑열차 사업의 손익과 위험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단지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준위탁매매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해랑상품 관련 용역은 위탁자인 원고가 해랑상품 이용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약설(略說)]

- 원심은, ① 이 사건 전세운임은 원고가 경상북도에 대한 열차 운행대행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해랑열차 사업에 관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준위탁매매로 볼 수 없고, 해랑상품 관련 용역 중 해랑열차 운행 부분의 공급주체는 원고이며, 해랑상품 운영 부분의 공급주체는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인 ‘해랑상품 수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대법원은 위 전세운임 및 해랑 상품 판매대금 관련 각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파기환송함.

[예규]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23-법령해석부가-0785, 2023. 12. 22.

사업자가 “공동도급사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쟁점용역”)의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잔대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약설(略說)]

-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함.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2022. 5. 30.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공사잔대금에 대하여 공동도급사간분쟁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8. 9. 판결 확정되어 수급사업자가 2023. 11. 22. 세금계산서 발급함. 국세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가 준공되어 완료된 때(2022. 5. 30.)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1년 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사전-2023-법규부가-0510, 2023. 10.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판례]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9서3674, 2023. 12. 20.

[사안]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A사(“발행회사”)가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중 일부(“쟁점전환사채”)를 펀드 등을 통해 취득한 후, 2018. 10. 1. 쟁점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19. 1. 31.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청구인은 2019. 4. 5.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펀드 등과 특수관계인 등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쟁점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으로 인한 전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함.

[판단]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2017. 9. 29.) 후인 2017. 12.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그 의장으로서 청구인 본인을 위 인수계약상 ‘매도청구권을 부여받은 자’로 지정하는데 기여하였고, 2018. 10. 1.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불균등하게 인수 등을 하여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쟁점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열거된 개별규정과의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하려면 해당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별규정 중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은 발행회사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펀드 등이 발행회사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통해 발행회사 주식가액의 하강국면에서는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반대로 그 상승국면에서는 발행회사 등이 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를 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주체와 인수주체 간에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회사가 그 대표이사이 청구인에게 대규모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은 심리적 현재까지 위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회사 주식의 상장 및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인수,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식 전환 등을 계획·시행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을 통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발행회사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없이 위 인수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인수

[판단] 하도록 하고 오직 청구인이 해당 이수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계속 만 얻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약설(略說)]

- 기획재정부의 ‘2015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①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및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②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적용시기는 2016.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임).
- 대상심판례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과 해당 사안의 경우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임.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200, 2023. 12.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당해 재산을 출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로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약설(略說)]

-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예규의 질의인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출연자의 경우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지방세법

[판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사안] A, B 회사(“소외회사”)는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7. 3. 31. 사용검사를 신청한 후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원고는 2017. 6. 26. 피고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등”)를 신고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판단]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약설(略說)]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심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검사 신청 시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소외회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부산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9누12237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심판례] IAT/BHS터널, 공동구, 남·북지하차도, 유도선교량, GSE교량,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0지1616, 2023. 11. 13.

[사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 중 ① BHS(수화물처리시스템, Baggage Handling System)/IAT(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 Intra Airport Transit) 터널 및 ② 공동구, 그리고 ③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부분(①, ②, ③을 모두 합하여 “쟁점설비”) 및 수조, 저장조, 송유관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분 내지 2019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이 건 재산세”)을 부과·고지함.

[판단] [쟁점설비 중 BHS/IAT 터널(①) 및 공동구(②)의 부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운수시설 중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건축물로 등재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등을 지하로 연결하는 「공항시설법」에 의한 필수시설로서, BHS/IAT 터널의 경우 동 시설이 없다면 지하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여 탑승객 및 수화물 등을 운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통행로 및 운반로이고 물리적 구조와 용도·기능면에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과 일체로 부착 및 합체되어 하나의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공동구의 경우 공항구역 내 수개의 건물에 공급되는 유tility 시설을 보호하는 지하구조물로서 공항건물과 일체되어 유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공항시설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설비 중 BHS설비 및 설비덕트(③)에 관한 부분] 처분청은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공항시설법」에서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공항 기본시설 내지는 지원시설로서, 공항 건축물의 필요·불가결한 준비시설 및 수반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BHS설비 및 설비덕트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BHS설비 및 설비덕트는 제2여객터미널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제2여객터미널 내에서 수하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항공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하물을 분류, 운송하는 장치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HS 설비 및 설비덕트를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대법원은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1976. 12. 28. 선고 75누239 판결),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합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인 경우 부합물이 아닌 기계장치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조심 2015지1274, 2015. 12. 7., 조심 2021지2589, 2022. 8. 9. 등).

[심사] 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감심 2021-4770·4771, 2023. 11. 1.

[사안] 청구인은 2015. 6. 3.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재결로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률에 따른 원시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 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판단] 구 지방세법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고,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인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는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중대한 차이는 승계취득한 권리의 경우 이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구 지방세법에는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 한편, 2016. 12. 27. 법 개정 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음(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감사원의 대상심사례는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이라고 한 결정이유에 비추어 해당 개정규정의 성격을 창설적 규정이라고 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반하여 조세심판원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8지884, 2019. 9. 27. 등).

관세법

[심판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법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 2023관0053, 2023. 12. 04.

[사안] 청구법인은 2021. 10. 20.~2022. 3. 4.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활AA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하면서 한-중 FTA 적용에 따른 협정관세율(13%)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2022년 3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실명 밀수 신고 제보”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혐의로 조사한 후, 2022. 5. 4. 청구법인에게 문 혐의 종결로 조사결과함. 처분청은 2022. 5. 30.~2022. 6. 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9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2. 6. 29. 청구법인을 방문 조사하여 15페이지 분량의 “자료제출 및 수입신고”라는 제목의 문답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및 도장날인을 받아 징구함. 이후, 처분청은 2022. 7. 20.~2022. 10. 20.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2022. 12. 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기에 청구법인은 i)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ii)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결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7.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처분청은 관세법 제110조 제2항에서 관세조사(제2호)를 관세법 조사(제1호)와 달리 정의하고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위한 관세조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관세법 조사는 조사방법 및 입증 취지 등에 차이가 있어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1조 표제를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로 한 것은 현행 제1항의 신설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로 한 순번 정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관세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같은 법 제111조 개정을 통해 오히려 관세법 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위 개정법률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을 같은 법 제270조(관세포탈죄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오로지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고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법 제38조의 3에 따른 과부족한 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도 해당함에도 이러한 관세법 조사를 관세조사와 구분하여 재조사금지원칙 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재조사금지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세법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경정과 관련한 내용을 수집하여 쟁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관세법 조사에 대하여 무혐의 통보한 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

[판단] 유등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 통상 관세조사를 시행하였다면 재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같은 법
_계속 제111조 제2항 제1호 즉,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이미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
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세조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보
다 관세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중복조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
어 세관공무원의 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재조사금지원칙이 무력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범 조사 이후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복 관세조사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함.

[약설(略說)]

-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미 조사한 납세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행정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하는 관세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관세법에서도 제111조에서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관세심사 중에 도출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조사로 이관되는 경우가 존재하나, 본 사례는 밀수신고 제보에 따라 관세포탈죄 혐의의 관세조사를 한 뒤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는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재조사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로
판결한 점에서 의미 있으며 처분청의 재조사금지원칙을 근거로 판단한 사례에 해당함.

삼정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주정연

S.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